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570
----------	-----

제출년월일 : 2000. 6. 9.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이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일부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및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자동차세의 감면대상인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을 종전 1급 내지 6급에서 1급 내지 7급으로 그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
- 나. 경기도신용보증조합이 경기도신용보증재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명칭을 조정함.(안 제21조)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1급 내지 6급”을 “1급 내지 7급”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를 각각 삭제한다.

제17조중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제21조 제목중 “신용보증조합”을 “신용보증재단”으로 하고, “경기도신용보증조합 설치및운영조례”를 “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용조례”로 하며, “경기도 신용보증조합”을 “경기신용보증재단”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과·소		세 무 과 ☎ 940-4231
입 안 자	세 무 과 장	석 명 범
	시 세 담 당	이 용 석
	담 당 자	정 재 현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①생략	①현행과 같음
②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중 최초로 감면신청하는 1대(당해 자동차를 매각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대체취득하여 등록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②----- ----- -----7급----- -----
(단서생략)	(현행과 같음)
1~4.(생략)	1~4.(현행과 같음)

제11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계획에 따라 주택개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동 사업계획에 의하여 자력으로 주택을 개량하는 대상자로서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최초 과세기 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1~4.(생략)

②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자(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안에서는 1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당해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락지구지정대상지역내의 주택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취락정비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

제11조(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 ①-----

-----거주하는 자(삭제) 및 그 가족이-----

1~4.(현행과 같음)

②-----거주하는 자(삭제) 및 그 가족이-----

제공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건축물 취득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제17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터미널법에 의하여 사업면허를 받은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정감한다.

제17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신용보증조합에 대한 감면) 경기도신용보증조합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경기도 신용보증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정감하고,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정감하며,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제21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경기도신용보증재단설립및기금운용조례에-----경기도신용보증재단-----

